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자격확인)에 따라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03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**
-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는 “주민등록번호”,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 및 “주소변동이력” 등 모든 항목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또는 “상세”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공급자격 적격 여부 확인 중 아래 서류 외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52조제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 확인 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 서류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※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세대구성원 확인 / 세대주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본인의 세대구성원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상 입증할 수 없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 확인 불가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(생년월일~입주자 모집공고일)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(단신부임)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증명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(단신부임)	세대원	· 청약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(또는 25년)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
생애 최초	○		자격요건 검증 확인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·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
	○		소득증빙서류		·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	· 신청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확인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충족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사실 확인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만 18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 확인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·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등재 확인)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,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 ※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· 견본주택 비치, 임신의 경우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
대리인 추가 서류	○		비사업자확인각서, 사실증명	본인 또는 해당자	· 비사업자확인각서 : 견본주택 비치, 소득이 없는 경우 “신고사실 없음” 발급
	○		위임장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대리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신청자 위임 확인(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		해당자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·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	해당자	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첨부1.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* 해당직장 *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*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재무재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 *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* 견본주택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첨부2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 서류

해당자격	증빙 제출서류		발급처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	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필수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]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: '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'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: '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	①,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위택스 (www.wetax.go.kr)
	해당자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(www.eum.go.kr)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*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주민센터

첨부3.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증빙 제출서류		발급처
자격 입증 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* 해당직장 * 세무서 *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 내역 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 납부입증 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	* 해당직장 * 세무서

※ 해당 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